#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8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송옥주 · 이병진 · 이재관

박 정・이수진・한정애

홍기원 • 민병덕 • 전종덕

한민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,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'병성감정'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,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

요가 있음.

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, 예방 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 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, 지방가축 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 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2(예방적 살처분 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역, 우폐역,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나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.
  - 1.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 - 2.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
  - 3.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.
- 1.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
- 2.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
- 3. 관할구역의 시·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축방역심 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경우

제21조제1항 전단 중 "제20조"를 "제20조 또는 제20조의2"로 한다. 제22조제2항 본문 중 "제20조제2항"을 "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
제28조 중 "제20조제1항 본문"을 "제20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"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"를 "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을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0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제20조제1항"을 "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"

으로 한다.

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"를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0조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"를 "제20조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"를 "제20조제2항 본문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"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중 "제20조"를 "제20조, 제20조의2"로 한다.

제52조제1항 전단 중 "제20조"를 "제20조, 제20조의2"로 하고, 같은 조제4항 중 "제20조에"를 "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"로 한다.

제53조 중 "제20조"를 "제20조, 제20조의2"로 한다.

제56조제1호 중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에"를 "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0 조의2제1항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방적 살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역, 우폐역,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·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살처분 명령) ① 시장・군	제20조(살처분 명령) ①
수・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	
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	
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	
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	
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	
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・	
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	
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	
축의 살처분(殺處分)을 명하여	
야 한다. <u>다만, 우역, 우폐역,</u>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	
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	
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	
<u>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</u>	
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	
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	
경우(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	
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	
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	
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	
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	

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 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 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 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 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예방적 살처분 명령)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역,
우폐역,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
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
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

하여야 한다.

- 1.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
- 3.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 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.
- 1.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
- 2.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
- 3. 관할구역의 시·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소속의 지방가

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 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 항제1호에 따라 격리·억류· 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(淘 汰)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(出荷)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 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표시 를 할 수 있다.

②・③ (생 략)
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생략)

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 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

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	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	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
로 정하는 경우 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	인정되는 경우
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	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
	로 정하는 경우
는 제20조의2	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
는 제20조의2	
	제20조 또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현 행과 같음)	는 제20조의2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현 행과 같음)	
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현 행과 같음)	<u>.</u>
행과 같음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- , — , .	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(현
②	행과 같음)
	②

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 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처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③ ~ ⑥ (생 략)

제28조(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저조치)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·제3호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, 제20조제1항 본문및 제2항, 제21조를 준용한다.

제48조(보상금 등) ① 국가나 지 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 또는 제20조의2제2
<u> কু</u>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세28조(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
조치)
<u>제20조제1항</u>
세48조(보상금 등) ①

- 1. 2. (생략)
- 3.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. 다만,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 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.

4. ~ 6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- 2. 제3조의4제5항, 제15조제1항, 제19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9조의2제1항, 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23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
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 또는 제20조의2제1
항 및 제2항에
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1. (현행과 같음)
2
제20조제1항
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, 제20조의2제1항
<u>— п с 1/, пио</u>

자

3. ~ 5. (생략)

④ ~ ⑦ (생 략)

제49조(생계안정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<u>제20조제</u> 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(가축 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 받아 실제 사육한 자)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49조의2(심리적·정신적 치료)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국립·공립 병원, 보건소 또는
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
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
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
수 있다.

1. 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

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생계안정 지원) ①
제20조제
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
② (현행과 같음)
제49조의2(심리적 · 정신적 치료)
①
1. <u>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</u>
1. <u>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</u>
1. <u>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</u>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

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

- 2. 제20조제2항 본문(제2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,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
- 3. 4. (생략)
- ② ~ ⑥ (생 략)

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,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 0조, 제21조제2항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 항,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 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,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 분,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 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 의 소각 · 매몰 · 화학적 처리. 매몰지의 관리, 매몰지 주변 환 경조사,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, 주민 교육・홍 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 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

2. 제20조제2항 본문(제28조에
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
다)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
3.・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
<u>제2</u>
0조, 제20조의2

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## ②·③ (생 략)

제52조(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 축전염병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 · 제5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를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시의 내용 및 사유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
,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2조(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
지시) ①
제20조, 제20조의2
<u>^  2011, ^  2011  2</u>
· 

## ②・③ (생 략)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 가축방역기관장의 지시(제20조 에 따른 조치에 관한 지시만 해당한다)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 · 제2항 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 담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.

제53조(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 역조치 요구) 국립가축방역기 관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, 혈청 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, 제17조, 제19조, 제2 0조, 제21조, 제23조, 제25조,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④	
<u>조 또는 제20조의2에</u>	
 제53조(가축방역기관장 <sup>-</sup>	등의 방
예35도(기국 8 파기된 8 역조치 요구)	
	- <u>제20조,</u>
<u>제20조의2</u>	

제5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. ~ 4. (생략)

제56조(벌칙)	

- 1. 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 1. 제20조제1항(제28조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또 <u>는 제20조의2제1항에-----</u>
  - 2. ~ 4. (현행과 같음)